

의안번호	2220024
의 퇴 인	임이자 의원
회 답 일	2026.9.28.
추 계 번호	26E358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현행 40%에서 50%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1,089억원, 2029년 1,254억원 등 3년간 총 3,513억원(연평균 1,17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개정안 중 소상공인 사용분에 대한 우대공제율 신설은 제외한 세수효과로, 해당 내용을 포함하면 세수효과는 증가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 (안 제126조의2 제2항)	-1,089	-1,170	-1,254	-3,513	-1,17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26조의2 제2항제1호가목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○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- (현행) 전통시장사용분 공제율: 40% - (개정안) 전통시장등사용분 공제율: 50%
2	안 제126조의2 제2항제1호나목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○ 소상공인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- (현행) 소상공인 사용분에 대한 우대공제율 없음 - (개정안) 소상공인 사용분을 '전통시장등사용분'에 포함하여 우대 공제율(50%) 적용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6조의2 제2항제1호가목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○	
2	안 제126조의2 제2항제1호나목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×	소상공인 지출액 및 연계된 근로소득자의 소득·지출액 자료 등이 부재하여 등과 합리적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, 법 시행 이후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
 - 2027년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(2026년 귀속분)부터 적용되며, 징수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한다고 가정
 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현행 2028년 12월 31일으로,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9년(2028년 귀속소득)까지 발생함
- 동 추계에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고려하지 않으며 전통시장분 소득공제율 상향에 따라 비례적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고 가정
 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납세자별로 총급여액·자녀수에 따라 한도액이 다양하게 적용되므로, 한도를 일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
- 전통시장분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확대에 따른 납세자의 행태변화 등은 고려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감면 실적

□ (감면실적) 2026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4조 1,360억원(잠정) 수준

- 2021년과 2023년 조세지출액은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치로, 각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,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함에 따라 조세지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¹⁾

[표 2]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액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	2026p
조세지출액	24,698	31,882	31,675	39,458	40,884	43,243	41,360

주: p는 잠정치임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(2) 추계 방법

□ 국세통계연보 자료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(2024년 귀속 총급여 규모별 전통시장 사용분 자료)를 토대로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인상분(10%p) 및 소득세 한계 명목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
-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개인별 총급여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상세자료(공제항목별 사용금액) 등을 통해 추계할 수 있으나, 자료의 한계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총급여규모별 신

1) ① 2021년(2020년 귀속)에는 2020년 3월과 4~7월 기간 동안 사용액에 대하여 각각 30~80%, 80%의 공제율을 적용(기존 15~40%)하고, 총급여규모별 공제한도를 30만원 확대함
 ② 2022년(2021년 귀속)에는 공제항목별 공제율이 정상화(15~40%)되고,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% 공제율 추가 적용
 ③ 2023년(2022년 귀속)에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이 전년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, 5%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각각 20% 추가공제 적용
 ④ 2024년(2023년 귀속)에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추가, 공제한도 통합 등 조정, 2023년(4~12월)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50%, 2023년(1~12월)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%로 한시 상향조정
 ⑤ 2025년(2024년 귀속)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% 추가공제(100만원 한도) 적용

용카드 사용액 집계자료(국세청 제출자료)를 이용

- 공제율 변경에 따른 소득공제액 변화는 납세자별 기본공제 한도, 한도 초과 사용액 중 추가공제 한도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, 해당 정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동 추계는 1인당 전통시장 사용금액²⁾에 공제율 상향분(10%p)을 적용한 금액을 모두 추가적으로 공제받는다고 가정함
- 기준연도(2024년 귀속) 기준으로 공제율 상향의 효과를 추계 후,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증가율('20~'24년 연평균 4.2%)을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

[표 3] 소비자물가상승률 가정: 2025~2028년

(단위: %)

	2025	2026	2027	2028
소비자물가상승률	2.1	2.6	2.4	2.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6년 NABO 경제전망 2026~2030」, 2026. 9.

(3) 추계 결과

-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현행 40%에서 50%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1,089억원, 2029년 1,254억원 등 3년간 총 3,513억원(연평균 1,17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 (안 제126조의2 제2항)	-1,089	-1,170	-1,254	-3,513	-1,171

2) 총급여 규모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인원으로 나눈 값

[참고]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(2024년 귀속 기준)

(단위: 명, 백만원)

총급여액 규모	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인원 ¹⁾	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 ²⁾	1인당 전통시장 사용금액 ³⁾	1인당 추가공제액	현행 1인당 과세표준 ⁵⁾	한계세율 (%)	세수효과 (억원)
	A	B	C	$D=C \times 10\%p$	E	F	$G=-(D \times F) \times B$
합계	11,183,151	9,806,082	0.53	—	—	—	-943.9
1천만 이하	421	—	—	—	—	—	—
1.5천만 이하	6,961	2,512	0.08	0.01	5.2	6%	-0.01
2천만 이하	152,297	133,206	0.18	0.02	7.2	6%	-1.4
3천만 이하	1,462,888	1,331,660	0.37 ⁴⁾	0.04	11.8	6%	-29.9
4천만 이하	1,872,009	1,678,892	0.40 ⁴⁾	0.04	17.5	15%	-100.0
4.5천만 이하	904,558	812,936	0.38	0.04	22.2	15%	-46.5
5천만 이하	836,618	755,438	0.47 ⁴⁾	0.05	25.4	15%	-52.7
6천만 이하	1,401,880	1,269,892	0.54	0.05	30.6	15%	-102.1
8천만 이하	1,902,255	1,707,287	0.64 ⁴⁾	0.06	41.4	15%	-163.1
1억 이하	1,169,444	1,013,339	0.76	0.08	58.3	24%	-184.5
2억 이하	1,294,813	1,020,508	0.68	0.07	96.1	35%	-244.3
3억 이하	115,288	62,463	0.63 ⁴⁾	0.06	197.6	38%	-14.9
5억 이하	45,517	14,991	0.59	0.06	327.0	40%	-3.5
10억 이하	14,379	2,553	0.64	0.06	604.9	42%	-0.7
10억 초과	3,823	405	0.69	0.07	1,885.6	45%	-0.1

- 주: 1) (제출자료)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 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인원
 2) (국세통계연보)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 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
 3) 총급여 규모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인원으로 나눈 값
 4) 해당 구간은 국세청 원자료의 이상치를 보정하여 산출한 값(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증가율 적용)
 5)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 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
 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 및 국세통계연보(2024년 귀속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